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 가.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582호
- 다. 제안일자: 2019. 3.29
- 라. 회부일자: 2019. 4.03

2. 제안 사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제6호)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제37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하 “제로페이”)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게 하는 등 제로페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1) 제로페이 도입 개요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8년 11월에 도입¹⁾하였으며, 제로페이의 인프라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

<표 1> “제로페이” 연차별 투자계획(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2018년 (추경)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767	3,000	3,867	300	300	300
인프라 보급	6,270	2,770	3,500	-	-	-
활성화	1,497	230	367	300	300	300

1) 서울페이추진반(경제진흥본부)에서 작성한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은 2018년 11월에 마련하였으며, 여기에는 서울페이의 기본구상,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금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만 가맹점을 포함해 2022년까지 140만 가맹점을 유치(목표²⁾)로 하고 있음.

<표 2>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로페이 가맹신청건수	200,000	300,000	400,000	500,000

2)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4조제2항 제6호)

-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제로페이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한강공원 내에서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은 본 조례 [별표 1]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이며, 이 중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운영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강사업본부 직영 시설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체육 시설과 대관 시설 등이 있으며, 민간운영시설에는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사용수익허가 시설과 서울함공원과 같은 민간위탁시설 등이 있음.

2) 2019년 성과목표(서울페이추진반에서 작성한 신년업무보고 자료 참고)

<표 3> 제로페이 이용시 이용료 감면가능 대상인 한강공원 이용시설

구 분	한강사업본부 직영 시설		민간운영시설(위탁·수익허가)	
	공공예약시스템	시설 대관	임대·위탁	사용수익허가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구, 야구, 배구, 족구, 농구, 배드민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테니스장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핑장 수영장 및 물놀이장
유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대여소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수상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르네상스호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아라호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함공원(위탁) 	

-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제로페이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축구장, 야구장 등을 이용하기 위한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은 금년 6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도입할 예정이지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민간운영시설 중에는 서울함공원과 같은 민간위탁 시설에만 제로페이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시설은 한강아라호, 테니스장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는 제로페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표 4>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제로페이 도입 현황(2019년 4월 10일 기준)

구 분	한강사업본부 직영 시설		민간운영시설(위탁·수익허가)		
	시설명	제로페이 도입일	시설명	제로페이 도입일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구, 야구, 배구, 족구, 농구, 배드민턴장 등 	'19. 6. 공공예약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후 도입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니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나루, 잠원, 독섬, 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19. 10. 전구체전 이후 설치 예정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핑장 		설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영장 및 물놀이장 		'19. 4. 운영자선 정후 신청 예정

유희시설			• 자전거대여소	설치예정
편의시설			• 주차장	설치예정
수상이용 시설	• 한강르네상스호	설치완료	• 한강아라호	설치완료
기타			• 서울함공원	설치완료

- 민간운영시설(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에 제로페이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면에 따른 수입 손실보전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서울함공원의 경우는 수입이 전액 세입처리되는 민간위탁시설이므로 별도의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는 없음.
- 또한, 사용수익허가시설은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용료 감면비율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운영자는 이를 따르도록 사용수익허가서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표 5> 한강공원 주요 이용시설의 사용수익허가서

구분	허가기간	내용
난지캠핑장	'17.1.1 ~ '19.12.31 (3년)	특수조건 제8조(사용료 징수) ③ 운영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테니스장	'17.2.1 ~ '20.1.31 (3년)	특수조건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④ 사용인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8.8.1 ~ '21.7.31 (3년)	
주차장	'19.2.1 ~ '21. 2.31 (2년)	허가조건 제17조(주차요금 징수) ④ 사용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요금과 징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전거대여	'19.1.1 ~ '19.12.31 (1년)	허가조건 제16조(손실보상) ①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에 대한 제조성(정비) 공사, 한강공원내 시설물 신·개축 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와 “서울시”가 승인한 민간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자전거대여점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수허가자는 한강사업본부에 손실보상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단,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 일례로, 과거 한강매점이나 자전거대여점에서 사업운영자가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및 공공시책에 따른 공공자전거 보급 등에 의한 운영손실로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손실보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금전 보상은 이루어 진적이 없음. 다만 사용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 혹은 기간 만료 후 연장기간 동안 감정평가액을 재평가하여 낮추어 준 사례는 있음.

<표 6> 한강공원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 사례

구 분	요구사항(운영사업자)	조치사항(한강사업본부)
한 강 매 점	여름철 홍수로 인한 매점시설물 훼손으로 시설보강 등에 의한 운영손실로 보상 요구	허가기간 2년 6개월 연장
자전 거대여	서울시 정책에 따른 공공자전거 보급 등에 의한 운영 손실로 보상 요구	허가기간 1년 연장, 사용료 감액

- 이밖에 이용료 감면과는 별도로, 특히 한강공원 주차장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출차지연과 이에 따른 이용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제로페이 도입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용수익허가시설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